

2025년 도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소 관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	무	부	소	관
대	법	원	소	관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II. 심사경과	2
III.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3
1. 법무부 소관	3
2. 대법원 소관	4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5
1. 법무부 소관	5
2. 대법원 소관	42
V. 대체토론의 요지	85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87
VII. 심사결과	89
VIII.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90
IX.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제시	91
붙임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92
붙임 2. 2025년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계획안 조정내역	93
붙임 3. 2025년도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94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1.

법제사법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법무부 소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수입 및 지출

2. 대법원 소관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수입 및 지출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9. 1.

2. 회부일자 : 2024. 9. 4.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5차 위원회(2024. 11. 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법무부 · 대법원)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11. 6.)

- 심사(법무부)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11. 7.)

- 심사 · 수정의결(법무부 · 대법원)

☐ 제16차 위원회(2024. 11. 8.)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 수정의결(법무부 · 대법원)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1. 법무부 소관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수입

2025년도 계획안	1,448억 7,700만원
2024년도 계획	1,370억 5,400만원
증(△)감	78억 2,300만원 (5.7%)

□ 지출

2025년도 계획안	1,448억 7,700만원
2024년도 계획	1,370억 5,400만원
증(△)감	78억 2,300만원 (5.7%)

2. 대법원 소관

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수입

2025년도 계획안	3,902억 6,600만원
2024년도 계획	2,313억 6,900만원
증(△)감	1,588억 9,700만원 (68.7%)

□ 지출

2025년도 계획안	3,902억 6,600만원
2024년도 계획	2,313억 6,900만원
증(△)감	1,588억 9,700만원 (68.7%)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법무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가. 기금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은 일반 회계전입금, 변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에 지출되고 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48억 7,700만원으로 2024년도(1,370억 5,400만원)에 비하여 7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음.

수입 항목 중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은 벌금 수납액 8%를 기준으로 88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정부예금회수에 56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나 지출 사업의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 2025년도 계획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서 2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2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 사업에서 2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음.

<수입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액	2025년도 계획안	2024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37,054	144,877	7,823	5.7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17	730	313	75.1
변상금 및 위약금	1,797	1,719	△78	△4.3
기타경상이전수입	2,717	3,164	447	16.5
정부예금회수	46,002	50,502	4,500	9.8
일반회계전입금	86,121	88,762	2,641	3.1

<지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액	2025년도 계획안	2024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37,054	144,877	7,823	5.7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7,060	40,005	2,945	7.9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51,546	54,540	2,994	5.8
기금운영비	48	48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230	△270	△10.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9	15	△34	△69.4
여유자금운용	45,851	48,039	2,188	4.8

나. 주요 검토사항

◆ 수 입 ◆

(1) 기타재산이자수입

(가) 계획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3억 1,300만원(75.1%) 증액 편성된 7억 3,000만원임.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 (A)			
기타재산이자수입	1,540	417	417	730	313	75.1

(나)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고려한 세입 증액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계획안 산출 시 연례적으로 “최근 3개년 수납액 평균”을

산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 2021-2023년도 수납액 평균 수준인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3년 간 예산 편성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등〉

연 도	금 액(원)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4억 1700만원	최근 3년(2019~2021) 수납액 평균(2.49억원) 수준 요구
2024계획(수정)	4억 1700만원	최근 3년(2020~2022) 수납액 평균(2.67억원) 수준 요구
2025계획안	7억 3,000만원	최근 3년(2021~2023) 수납액 평균(7.3억원) 수준 요구

* 자료: 법무부제공 자료 가공

- 그러나,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초과 수납되고 있는데, 2022년도는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31.9%이었고, 2023년도에는 369.3%까지 급증하여 계획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7월 말 기준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2.4%, 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는 4억 2,700만원으로 나타남.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A)						
2020년도	426	426	171	152	35.7	88.9	19	—
2021년도	426	426	111	99	23.2	89.2	12	—
2022년도	417	417	558	550	131.9	98.6	8	—
2023년도	417	417	1,570	1,540	369.3	98.1	30	—
2024 년도	7월말 기준	417	926	844	202.4	91.1	82	—
2025년도(안)	730	730	—	—	—	—	—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 가공

○ 이는 최근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¹⁾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액 규모가 급증하면서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5년간 수납액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	국고보조금 이자	합계		
	수납액	수납액	계획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2019년도	438	58	426	496	116.4
2020년도	92	60	426	152	35.7
2021년도	52	47	426	99	23.2
2022년도	502	48	417	550	131.9

1) 법무부는 여유자금 위탁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당해연도 회수 여유자금 규모에 비례하는 만큼을 당해연도 평가수익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2023년도	1,399	141	417	1,540	369.3
2024년도 (7월말 기준)	680	164	417	844	202.4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기금의 2025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억원 증액된 약 505억 2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데,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계획안(7억 3,000만원)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계획안을 증액편성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	—	—	4,800	4,800	—	100.0	—	—
2022	1,916	1,916	1,916	9,900	9,900	516.7	100.0	—	—
2023	14,805	14,805	14,805	31,500	31,500	212.8	100.0	—	—
2024	46,002	46,002	46,002	47,000	47,000	102.2	100.0	—	—
2025(안)	50,502	50,502	—	—	—	—	—	—	—

* 자료: 법무부

- 기준금리가 3.5% 수준이었던 2023년도에는 315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이 회수되어 13억 9,900만원의 평가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담 주간운용사의 분석²⁾을 참고하여 연평균 기준금리가 2.8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³⁾ 계획안대로 505억 200만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약 18억 2,600만원⁴⁾의 평가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해 평가수익금을 포함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5년도 계획안 7억 3,000만원은 매우 적은 수준임.

- 법무부는 통상적인 편성 근거대로 최근 3년 평균 수납액인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유자금 회수 규모 급증으로 2023년도 결산액 15억 4,000만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억원 증액되어 역대 최대규모인 약 50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계획안에 따른다면 2025년도에도 대규모 여유자금 회수가 이루어져 평가수익금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가 편성한 7억 3,0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평가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금의 경우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전담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2024년 10월 11일 금리인하(3.5%→3.25%) 이후, 2025년도 2차례 이상 추가 인하로 2025년도 말 기준 금리를 2.5%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음.

3)참고로, 법무부는 2023년도까지 여유자금 전액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였으나, 여유자금 규모 급증으로 2024년도부터 여유자금 중 28.6%를 기대수익률이 높은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므로, 2023년도와 비교할 때 자산포트폴리오의 변경으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대수익률이 방어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4) 13억 9,900만원*(505억200만원/315억원)*(2.85%/3.5%)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계획액과 결산 시 수납액의 구조적인 차이가 반복되는 경우 기금의 거시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급증한 기금 여유자금 규모와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 규모를 고려하여,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포함된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세입 계획액을 최소 2023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일반회계전입금

(가) 계획안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91-911)은 벌금 수납액의 8%를 세입조치한 것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26억 4,100만원(3.1%) 증액 편성된 887억 6,200만원임.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 (A)			
일반회계전입금	94,200	86,121	86,121	88,762	2,641	3.1

(나) 법정전입금에 따른 정산절차 이행 및 벌금 예산안과의 연계 편성 필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⁵⁾은 정부로 하여금 “집행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된” 벌금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벌금 수납예상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획액(안)으로 편성해왔으며,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년도	106,054	$[1,249,575(5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1.032 \times 0.08]$
2022년도	94,200	$[1,177,500(3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08]$
2023년도	94,200	$[1,188,900(5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99 \times 0.08]$
2024년도	86,121	$[1,076,507\text{백만원}(3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08]$
2025년도(계획)	88,762	$[1,109,529\text{백만원}(3년\ 평균\ 벌금수납액) \times 0.08]$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일반회계전입금의 계획액(안)은 실제 법정전입금액과 계획안 간의 차액을 산식에 반영하여 정산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금액만큼의 재원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된 2025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 예산안과 연계되지 못하고 상이한 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먼저,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편성 시 실제 법정전입된 금액의 정산절차를 반영하지 않아 법령이 기금에 납입하도록 한 금액과 실제 납입된 금액 간의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회계전입금의 계획안 편성 당시 예측한 벌금수납예상액과 연

도말 실제 집행된 벌금액 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 세입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정 전입금액을 정산하여 일반회계전입금계획액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임.⁶⁾

- 이에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2011년) 이후 2011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매년 연도말 확정되는 법정전입금액과 당초 편성한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 간의 차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순차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2013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을 편성할 때 “법정전입금액(전전년도 벌금수납액×법정전입비율×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전전년도 전입금 차액”이라는 산식을 사용하여 전전년도 전입금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도록 편성하였음.

6)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2013년도~2018년도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3년도	52,397	[1,261,965백만원(2011년 벌금수납액)×0.05(벌금전입비율)×1.0095(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11,300백만원(2011년 전입금 차액)]
2014년도	53,006	[1,227,714백만원(2012년 벌금수납액)×0.05(벌금전입비율)×0.972(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6,661백만원(2012년 전입금 차액)]
2015년도	86,014	[1,331,409백만원(2013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4075(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2,874백만원(2013년 전입금 차액)]
2016년도	94,856	[1,394,096백만원(2014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14(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10,039백만원(2014년 전입금 차액)]
2017년도	80,110	[1,348,957백만원(2015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17(5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2,203백만원(2015년 전입금 차액)]
2018년도	80,110	[1,362,766백만원(2016년 벌금수납액)×0.06(벌금전입비율)×1.01706(4년간 벌금수납액 연평균증가율)-3,051백만원(2016년 전입금 차액)]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정부는 201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의 산출산식을 변경하여 2017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입금 차액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인 계획액을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되, 매년 발생하는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 납입액 간 차이(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27억원, 최대243억원)가 5년이상 정산되지 않았음.

<최근 5년 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년	2023년
벌금	계획액(A)	1,511,440	1,664,996	1,424,025	1,424,025	1,677,985	1,139,679	1,091,646
	수납액(B)	1,220,209	1,162,450	1,083,496	1,143,747	1,020,899	1,064,874	1,242,814
	수납률	85.4	69.8	76.1	80.3	60.8	93.4	113.8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C)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수납액(D)	80,110	80,110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법정전입금액 (E=B*법정전입률 ⁷⁾)	77,413 (B*6%)	69,747 (B*6%)	65,010 (B*6%)	68,625 (B*6%)	81,672 (B*8%)	85,190 (B*8%)	99,425 (B*8%)
	법정전입금액과 수납액의 차액 (D-E)	2,697	10,363	17,430	13,815	24,382	9,010	-5,225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 정산 규정 부재 등으로 2019회계연도부터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⁸⁾은 명확히 정부로 하여금 “집행된 벌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

7) 과거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입 비율을 6%로 정하고 있었으나,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의 감소 추이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2018년 1월 시행)”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전입비율을 종전의 6%에서 8%로 상향하였고, 2021회계연도 계획액부터 8%의 전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획안과 법정전입금액 간 차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음.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는 2023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법정전입금 관련 법령준수를 위한 정산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⁹⁾

○ 다음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일반회계의 벌금 및 과료 예산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간 연계·편성이 되지 아니하여 계획안의 편성 근거 및 정합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 즉, 법령이 정한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는 “집행된 벌금 수납액×8%”이므로, 연도말 벌금 수납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인 벌금 및 과료 예산안과 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이 연계·편성되어야 함. 그러나 2025년도 벌금 및 과료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23년 수납액 수준인 전년대비 22.6%로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은 최근 3년 간 벌금수납액 평균 수준인 전년대비 3.1%로 증액 편성되어, 두 사업의 계획안 편성에 있어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9) 202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시정요구명: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지적사항: 법정 전입금액(집행된 벌금액 × 8%)이 아닌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납입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2023-2025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와 일반회계전입금 편성 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벌금 및 과료 예산안 편성 근거	일반회계전입금 편성 근거
2023 년도	최근 3년(2019~2021) 수납액 평균 수준 1,091,091	최근 5년(2017~2012) 평균 벌금수납액 수준 94,200 [1,188,900 ('17년 1,342,139 + '18년 1,215,520 + '19년 1,137,471 + '20년 1,179,379 + '21년 1,069,936) / 5)] × 0.08
2024 년도	전년 수준 1,091,091	최근 3년(2020~2022) 평균 벌금수납액 수준 86,121(△8,079) [1,076,507 ('20년 1,143,747 + '21년 1,020,899 + '22년 1,064,874) / 3)] × 0.08
2025 예산 안	수납 증가 추세 고려, ' 23년 수납액 수준 1,337,329	최근 3년(2020~2023) 평균 벌금수납액 수준 88,762(2,641) [1,109,529('21년 1,020,899 + '22년 1,064,874 + '23년 1,242,814) / 3)] × 0.08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한 계획액과 법정전입금액 간 차액 정산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과 벌금 및 과료 예산안 산출·편성을 연계함으로써, 계획안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지 출 ◆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가) 계획안 개요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은 범죄피해자 상대 상담과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3억 4,300만원(1.6%) 증액 편성된 214억 4,200만원임.

〈2025년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115	21,099	21,099	21,442	343	1.6

- 동 사업은 ①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을 지원·운영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스마일센터 운영”(스마일센터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

터 설치·운영”(법무부 직접수행, 신규), ② 범죄피해자에게 치료 및 자립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경찰청 직접수행),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민간경상보조), ③ 범죄피해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현장정리”(경찰청 직접수행), “범죄피해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등 8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각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2023년도		2024년도 (24년 7월 말)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 A
	계획액	집행액 (실집 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 행액)			
합 계	17,270	17,115 (16,788)	21,099	13,379 (10,225)	21,442	343	1.6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	3,100	753	1,343	△1,757	△56.7
범죄피해자지 원센터운영	3,855	3,855 [3,840]	4,516	3,118 (2,119)	5,267	751	16.6
스마일센터 운 영	8,263	8,150 (7,837)	8,335	6,353 (4,431)	8,571	236	2.8
범죄피해자 치 료비, 생계비	3,503	3,465	3,300	2,008	4,413	1,113	33.7
범죄피해자 간 병비 등	508	508 (508)	708	530 (303)	708	—	—
범죄피해 현장 정리	409	396	409	235	409	—	—
범죄피해 법률 구조	412	412	412	309 (289)	412	—	—
범죄피해자지 원 사업	320	329	320	71	320	—	—

(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 교육의 집행 및 실적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2개의 교육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의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를 교육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이하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이라고 함) 예산 1억 5,000만원(400명×375,000원)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는 법무부 산하 위탁운영기관인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법무부 등록법인¹⁰⁾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를 교육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하 “센터 종사자 교육”이라고 함) 예산 5,000만원(100명×500,000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두 사업 최근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안 편성 기준 대비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이 축소 운영되는 등 교육실적이 미흡하고, 실집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교육의 실적 및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의 2024년도 계획액 및 2025년도 계획안 1억 5,000만원(400명×375,000원)은 400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 교육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상·하반기 각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산 편성기준 대비 실제 교육규모가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종사자 교육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구분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센터 종사자 교육
2023 년도	계획액	—	5,000만원 = 160명 × 312,500원
	집행액	—	7,273만원 = 61명 × 1,192,295원
2024 년도	계획액	1억 5,000만원 = 400명 × 375,000원	5,000만원 = 160명 × 312,500원
	집행액	1억 5,000만원 = 300명(예정) × 500,000원	5,000만원 = 140명(예정) × 357,143원
2025년도 계획안		1억 5,000만원 = 400명 × 375,000원	5,000만원 = 100명 × 500,000원

* 자료: 법무부

- 다음으로, ‘센터 종사자 교육’의 2024년도 계획액 5,000만원(160명×312,500원)은 160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140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 또한 예산 편성기준 대비 실제 교육규모는 축소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2023년도에도 160명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 과정에서는 당초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7,273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실제 교육 이수인원은 61명(고급교육 19명, 연수교육 42명)으로 계획 대비 50% 미만이었고, 계획 대비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기본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고급교육은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축소 실시하였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을 초과하여 계약한 당초 전적대로 7,273만원의 대금을 정산없이 용역업체에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발생시킨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집행방식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음.¹¹⁾

- 따라서 법무부는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 ‘센터 종사자 교육’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제출된 계획보다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점, 관련 교육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의 국회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적 및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 202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시정요구명: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시정요구 유형: 주의

지적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타 내역사업 예산을 혼용 집행하였으며,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미흡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예산혼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의 일반용역비로 단일 편성하며,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가) 계획안 개요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사업은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을 대상으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이전비·임시숙소 숙박비 또는 민간경호를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20억 9,400만원(60.8%) 증액 편성된 55억 4,000만원임.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 A
		당초	수정 (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521	3,446	3,446	5,540	2,094	60.8

- 동 사업은 신변보호장치(법무부-경찰청·검찰청 직접수행), 이전비 지원(법무부-검찰청 직접수행), 임시안전숙소(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직접수행) 및 민간경호지원(법무부-경찰청 직접수행)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역사업별 2025년도 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2023년도		2024년도 (24년 7월 말)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 A
	계획액	집행액 (실집 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 행액)			
합 계	3,564	2,521	3,446	1,798	5,540	2,094	60.7
신변보호장치	2,404	1,375	2,045	1,100	2,362	317	15.5
이전비지원	200	200	200	158	200	—	—
임시안전숙소	960	960	1,201	540	528	△673	△56.0
민간경호지원	—	—	—	—	2,450	2,450	순증

(나) 신변보호장치 예산 감액 및 임시안전숙소 예산 증액 조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신변보호장치” 사업의 집행을 부진을 이유로 전체
적으로 미흡평가를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2025년도 동 세부사업 예산의 내역사업별 계획안을 살펴보
면, 집행이 부진했던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700만원
(15.5%) 증액되어 23억 6,200만원이고, 임시안전숙소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원(56%) 감액되어 5억 2,800만원이며, 신규 내역사
업인 민간경호지원 사업예산이 24억 5,000만원 편성되면서, 동 세부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보다 오히려 20억 9,400만원 증액 (60.7%)된 5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에 대해 법무부 및 경찰청은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신형 장비 도입 과정에서 2023년만 일시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했을 뿐, 2024년부터는 전액 정상집행이 가능하며, 매년 일정금액이 장비사용료로 소요되어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하므로, 임시안전숙소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 내에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피해자 1인당 지원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① 2024년도 현재 신변보호장치 보유대수 대비 지급실적을 고려할 때, 현재 보유분만으로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변보호장치 신규 확보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하고, ② 운용실적이 매우 미흡한 검찰청 보유분은 축소하고 경찰청 사업과 통합·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실수요 대비 과소편성된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재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최근 5년 간 위치확인장치 보유대수 및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보유기기 1대당 지급횟수는 연간 최대 3.67회이므로, 2025년도에 신규구매 없이 2024년도 보유분 7,872대로 28,890건 정도의 신청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추산되어 연내 지급수요 17,000여건 이상¹²⁾에

12) 2024년도 8월까지 지급건수(11,482)를 바탕으로 2024년 연도말 기준 지급실적을 예측하면 17,223건 (11,482/8개월*12개월)임. 여기에 전년대비 증가율을 곱하여 2025년도 연내 수요를 예측하면 약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5년도 경찰청의 신규 장치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3억 5,758만원(1,268대×282,000원)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6년 간 위치확인장치 보유 및 지급 실적>

(단위: 대,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	2025
보유 대수 (A)	계	2,471	2,472	3,872	3,872	10,172	7,872	9,140
	경찰청	2,300	2,300	3,700	3,700	10,000	7,700	8,968
	검찰청	171	172	172	172	172	172	172
신규 구매 대수	계	2,300	172	1,400	—	6,300	—	1,268
	경찰청	2,300	—	1,400	—	6,300	—	1,268
	검찰청	—	172	—	—	—	—	—
폐기 대수	계	2,050	171	—	—	—	—	—
	경찰청	2,050	—	—	—	—	2,300	—
	검찰청	—	171	—	—	—	—	—
지급 대수 (B)	계	7,089	6,831	11,007	14,223	16,697	11,482	—
	경찰청	7,057	6,801	10,989	14,208	16,690	11,480	—
	검찰청	32	30	18	15	7	2	—
기기1 대당 지급 횟수 (B/A)	계	2.87	2.76	2.84	3.67	1.64	1.46	—
	경찰청	3.07	2.96	2.97	3.84	1.67	1.49	—
	검찰청	0.19	0.17	0.10	0.09	0.04	0.01	—

* 자료: 법무부

- 또한, 검찰청이 확보·운용중인 172대의 신변보호장치는 2023년과 2024년 지급 실적이 각각 연 7회, 연 2회(8월말 기준)여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검찰청 보유분 172대를 축소하

17,766건[17,223건*(17,223건/16,697건)]정도 일 것으로 보임.

여 최대 4,850만원(172대×28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되,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변보호장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 보유분과 통합·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끝으로, 임시안전숙소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실수요 대비 과소 편성되어,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예산 9억 4,600만원으로는 7,038건(10,971박)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2억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집행추이상 전년에 대비하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25년도 계획안에서는 전년대비 6억 7,000만원(56%) 감액된 5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실수요 대비 과소 편성으로 보임. 따라서 앞서 감액조정을 검토한 예산의 최대치인 4억 608만원을 활용하여 실수요 대비 과소편성된 임시안전숙소 사업 예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 간 임시안전숙소 사업 계획액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액	집 행 액	지원건수
2020년	475	475	4,668건 (7,385박)
2021년	595	627	6,569건 (9,979박)
2022년	682	682	6,954건 (10,202박)
2023년	960	946	7,038건 (10,971박)
2024. 9월	1,201	734	5,499건 (9,482박)

* 자료: 경찰청

- 종합하면, 2025년도 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변보호장

치 사업의 경찰청 장치 1,268대 추가 확보 예산 및 검찰청 보유분 172대 운용 예산의 합계인 최대 4억 608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임시안전숙소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민간경호지원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민간경호지원” 사업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350명을 선정하여 피해자별로 14일(1일 10시간) 동안 민간경호원 2인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경찰청 일반회계에 연 7억원 규모로 편성된 시범사업이었으나, 2025회계연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3.5배 증액된 24억 5,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수도권 100명에서 전국 350명으로 확대되었음.

<민간경호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전국 고위험 범죄피해자 350명**
- **(지원 기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아래와 같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의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경우
 -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교도소 출소 등을 앞둔 경우
 - 가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재판 등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우
 - 가해자가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협 언동을 보였으나 도주·잠적하는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체포·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 추가피해 위험이 커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필요한 사유 등을 시도경찰청 승인 요청 공문에 상세히 기재하여 경찰서장 결재 후 송부
- **(지원 기간) 14일 이내**로 하고(가해자 구속 등 위험 해소시 조기 종료), 필요시 시도경찰청과 협의하여 1회(14일 이내) 연장 가능
 - ※ 민간경호는 장기간 지원이 곤란하므로 신속한 위험 해소를 위해 △가해자 수사(체포·구속·유치 등) △피해자 거소 이전 등 적극 추진
- **(경호 시간) 민간경호인 2인 하루 10시간 지원을 기준으로** 하되, 자영업·회사원·학생 등 피해자의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절차)** ① 안전조치 신청(피해자) → ② 위험성 판단(담당 수사관) → ③ 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및 지원 결정(사건 담당 과장 주관) → ④ 시도경찰청 승인 → ⑤ 경호 계획 수립(피해자·수사관·피해자보호담당·경호업체 참여) → ⑥ 경호 지원 개시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동 사업은 ①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지원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 건당 비용은 매우 높아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비용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② 민간경호원의 책임한도 및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과소·과잉대응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③ 일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민간경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 없이 대폭 확대할 경우 사업체계의 분절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에 대한 신중한 접근·분석 후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대폭 확대되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데, 범죄피해자 발생건수 대비 지원대상·기간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 건당 소요비용이 매우 높은바,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의 적정성·지속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023년도의 경우 연간 10만 건 이상이고 증가하는 추세임.¹³⁾ 반면, 동 사업을 통해 민간경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연간 350명 정도이고, 범죄피해자 중 극소수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어서,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최근 5년 간 연도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9월
스토킹 신고	4,515	14,509	29,565	31,824	23,181
교제폭력 신고	49,225	57,305	70,790	77,150	64,246

* 자료: 경찰청

- 무엇보다도, 집행방식에 있어 스톡·교제폭력 범죄는 발생기한을 정하기가 곤란함에도 동 사업은 14일 동안, 하루 10시간이라는 일시적·제한적 서비스에 700만원의 비용을 제공하며, 1개월 기준으로는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경호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찰공무원의 월 인건비 수준¹⁴⁾과 비교할 때 높은 단가를 보임.
- 고비용이 소요되고 지원대상이 한정적인 동 사업의 특성은 범죄피해자 등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타 내역사업들과 비교하는 경우 더욱 명확해짐.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계획안 중 민간경호지원사업은 소요예산 비중이 44.2%로 가장 높으나, 지원인원 비중은 전체의 1.6%인 350명에 그쳐 소요예산 대비 지원인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등 비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인원	인당 평균지원금액	총 예산 (2025년도 계획안)
민간경호지원	14일간 일 10시간 민간경호원 2인이 경호	350명 (1.6%)	700만원	24억 5,000만원 (44.2%)
신변보호장치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최대 6개월 제공	16,690명 (75.9%)	14만 1,522만원	23억 6,200만원 (42.6%)
이전비지원	보복범죄를 피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 비용지원	200명 (0.9%)	100만원	2억원 (3.6%)
임시안전숙소	보복범죄를 피하기 위해 1~5일간 숙박업소 임시거주 비용지원	4,743명* (21.6%)	11만 1,322원	5억 2,800만원 (9.5%)
계		21,983명 (100%)	25만 2,013원	55억 4,000만원 (100%)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 가공

(임시안전숙소 사업의 경우 2023년도에 1건(명) 당 평균 1.523박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 계획안(7,223박 지원)에 따른 예상지원인원 산출)

1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순경 1호봉의 월지급액은 187만 7000원이고, 가장 높은 치안정감(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 다음의 두 번째 상위 계급) 23호봉의 월지급액은 773만 9,200원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피해자 보호·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비용효율성 및 지원의 형평성을 충실히 고려해야하므로, 신변보호 강화사업 예산 중 44.2%를 활용하여 1.6%의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사업의 내재적인 한계인 민간경호원의 책임한도 및 제한된 권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민간경호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공권력 행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음. 반면, 과잉경호나 사생활침해 등 권한 남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 또한, 민간경비업체는 정규직 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경호원이 배치될 경우¹⁵⁾ 책임성 및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음.

15) 과업내용서

제10조(배치 인원) ① 경호대상자 1명당 배치 인원은 2인 이상을 1조로 하여 1개조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호원은 경호업체의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직원이 아닌 경호원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조별로 1명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 끝으로, 이미 일부 지자체가 유사한 민간경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나 추진체계를 점검하지 않은 채 사업을 확대할 경우 사업집행의 통일성·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서울, 부산, 경남, 광주, 울산, 전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민간경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2025회계연도계획안에 따라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경호지원 사업 추진 현황 비교>

구분	경찰청	서울청	부산청	경남청	광주청	울산청	전북청
운영시기	'23. 6월~	'23. 10월~	'23. 10월~	'23. 6월~	'24. 4월~	'24. 7월~	'24. 9월~
지원대상	최종 불문 고위험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최종 불문 고위험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최종 불문 고위험 피해자
지원기간	14일 이내 (14일 연장 可)	7일 이내 (7일 연장 可)	5일 이내 (5일 연장 可)	3일 이내 (15일 연장 可)	10일 이내 (연장 불가)	7일 이내 (10일 연장 可)	7일 이내 (7일 연장 可)
사업예산	7억원 (경찰청)	2억 2,000만원 (자치단체)	5,000만원 (자치단체)	5,600만원 (자치단체)	1억원 (관내기업 조성기금)	5,800만원 (자치단체)	3,000만원 (적십자 기탁금)

* 자료: 경찰청

- 특히, 2023년도 및 2024년도 경찰청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도권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2025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추진할 경우, 분절적인 사업추진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

일성·효율성 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편성된 민간경호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확대 이전에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기금 재원 중 배정 비중은 높으나, 비용 대비 지원인원이 매우 한정적인 사업에 제기되는 지원요건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 등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동 사업은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 계획안 개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6-305)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비전담 국선변호사 수당 지원, 관련 교육·홍보·점검을 수행하는 보조·직접 병행¹⁶⁾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도 수정 계획액 대비 9억 3,500만원(7.4%) 증액 편성된 134억 9,500만원임.

〈2025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4	12,560	12,560	13,495	935	7.4

- 동 사업은 ①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운영”(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경상보조), ②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지급하는 “국선변호사 수당”(법무부 직접수행), ③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화 교육,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현장점

16) 국선전담변호사 채용·교육 등 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간경상보조(100%)형태로 수행하며, 그 외 사업은 법무부가 직접수행함.

검을 실시하는 “교육, 홍보, 점검”(직접수행)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각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2023년도		2024년도 (24년 7월 말)		2025년 계획안 (B)	증감 (B-A)	(B-A)/ A
	계획 액	집행액 (실집 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 행액)			
합 계	9,707	9,704 (9,237)	12,560	7,603 (6,303)	13,495	935	7.4
국선변호사 수당	5,415	5,412	7,585	3,889	7,585	—	—
교육, 홍보, 점검	59	59	59	27	59	—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4,233	4,233 (3,766)	4,916	3,687 (2,387)	5,851	935	19.0

(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체계 재검토를 통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예산 일부 감액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사업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함.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억 3,500만원(19%)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건비 증액분임.

- 법무부는 2013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당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월급여를 법원의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 수준에

맞추어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월급여는 10년 이상 동결되어왔음. 이에 2025년도 계획안은 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의 보수체계와 같이 경력에 따른 보수 인상 방식을 도입하여, 2년 미만은 월 600만원, 2년 이상 4년 미만은 월 700만원, 4년 이상은 월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 및 2025년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계획액(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내역	산출근거	금액	내역	산출근거	금액	
가.인건비		3,581,960	가. 인건비		4,338,360	756,400
1) 기존 43명	43명*6,010,000원*12월=	3,101,160	1) 2년 미만	25명*6,010,000원*12월=	1,803,000	
2) 증원 10명	10명*6,010,000원*8월=	480,800	2) 2년 이상 4년 미만	13명*7,010,000원*12월=	1,093,560	
			3) 4년 이상	15명*8,010,000원*12월=	1,441,800	
나.고용부담금		718,993	나.고용부담금		848,294	129,301
1)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400,463	1)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486,764	86,301
가) 기존 43명	43명*6,010,000원*12월*11.18%=	346,710	가) 2년 미만	25명*6,010,000원*12월*11.22%=	202,297	
나) 증원 10명	10명*6,010,000원*8월*11.18%=	53,753	나) 2년 이상 4년 미만	13명*7,010,000원*12월*11.22%=	122,697	
			다) 4년 이상	15명*8,010,000원*12월*11.22%=	161,770	
2)퇴직금 적립	53명*6,010,000원=	318,530	2)퇴직금 적립		361,530	43,000
			가) 2년 미만	25명*6,010,000원=	150,250	
			나) 2년 이상 4년 미만	13명*7,010,000원=	91,130	
			다) 4년 이상	15명*8,010,000원=	120,150	

-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과 비교 시 초임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 없어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신규 채용 지원률이 저조한 등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2025년도 계획안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도 경력에 따른 보수 인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험이 축적된 우수인력을 유지하여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용 계약을 맺고 대부분 공단 각 지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동일 경력 대비 공단 소속변호사의 보수 수준과 비교할 때 금년도에 반영된 보수 인상 수준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
- 2025년도 계획안에 반영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봉과 공단 소속변호사(다급)의 연봉을 비교할 때, 1년차(1호봉)는 900만원, 2년차(2호봉)는 1,800만원, 4년차(호봉)는 2,50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함. 또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고용 재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제변호사와 연봉을 비교하더라도, 1년차는 200만원, 2년차는 1,200만원, 4년차는 2,2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발생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임기제변호사 간 연봉 비교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025년도 계획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다급 소속변호사(호봉제) (2023년도 지급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변호사 (2023년도 지급기준)	
1년차	72,000,000원	1호봉	62,827,296원	1년차	70,000,000원
2년차	84,000,000원	2호봉	65,853,484원	2년차	71,960,000원
3년차	84,000,000원	3호봉	68,961,908원	3년차	72,607,640원
4년차	96,000,000원	4호봉	70,953,828원	4년차	73,624,147원
5년차	96,000,000원	5호봉	73,014,356원	5년차	74,875,757원
6년차	96,000,000원	6호봉	76,334,076원	6년차	76,747,651원
7년차	96,000,000원	7호봉	78,504,780원	7년차	79,050,081원
8년차	96,000,000원	8호봉	80,724,012원	8년차	80,986,808원
9년차	96,000,000원	9호봉	82,974,156원	9년차	82,970,985원
10년차	96,000,000원	10호봉	85,262,922원	10년차	85,003,774원
11년차	96,000,000원	11호봉	87,570,004원	11년차	87,086,366원

* 자료: 법무부

- 또한, 2023년도 공단의 다급 소속변호사(1호봉~30호봉) 평균연봉은 약 91.4백만원, 나급 소속변호사(1호봉~28호봉) 평균연봉은 110.7백만원, 가급 변호사(1호봉~14호봉) 평균연봉은 144.4백만원이며, 현재 공단은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부족 문제로 향후 호봉제는 폐지하고 직무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동일 경력 대비 공단 소속·임기제변호사의 보수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 기준 연차를 조정하는 등 보수체계를 재검토하여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인상분을 일부 감액 조정함으로써,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공단 소속변호사와 임기제변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대법원 소관 (전문위원 김 성 완)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 관》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현황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법률 제13565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2015. 12. 15. 시행)에 따라 설치된 사업성 기금으로, 과거 국가재정으로 편입되지 않고 운영되던 법원의 공탁출연금을 기금화한 것임.

국회에서는, 공탁출연금 운용 사업은 재정사업에 해당함에도 국가재정에 편입되지 않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므로 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¹⁷⁾ 이러한 지적 등에 따라 동 기금이 설치되었음.

- 본 기금은 「공탁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민간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 주된 재원이며(동법 제29조제1항),¹⁸⁾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1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12), 424.

18) [공탁법] 제29조(기금의구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공탁 제도 개선, 국선변호인·소송구조·조정 제도 운용 및 기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결공익사업)의 수행에 활용됨(동법 제31조).¹⁹⁾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과 용도(「공탁법」) >

재원(제29조제1항)	용도(제31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1)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 기타 출연금·기부금(3) ◦ 기금 운용 수익금(4) ◦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5)	◦ 공탁 제도 개선, 공탁전산시스템 개발·운용(1) ◦ 국선변호인 및 소송구조 제도 운용(2) ◦ 조정 제도 운용(3) ◦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 사업 지원(4)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5)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의결한 공익사업(6)

주: 괄호 안은 대상 조문 해당 호의 번호

- 본 기금의 규모는 공탁금 운용 수익의 누적 등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액은 3,902억 6,600만원 수준임.
-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6회계연도에는 538억 1,800만원이었으나 연평균 14.3%씩 증가하면서 2023회계연도에는 1,368억 8,900만원에 이르렀음.

19)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규모(2016-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 감
계획액	51,590	74,567	115,742	145,315	182,595	199,285	231,369	390,266	25.2
지출액	53,818	94,569	135,870	123,597	133,284	136,889	-	-	14.3

주: 연평균 증감의 경우 계획액은 2016-2025년 기준, 지출액은 2016-2023년 기준

- 기금 수입은 민간출연금, 예치금·예탁금 등 회수, 기타 변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상 민간출연금(59-594)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안 3,902억 6,600만원 중 58.9% 정도인 2,299억 4,200만원이 민간출연금에 해당함.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2019-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 입	94,569	135,870	123,597	133,284	136,889	231,369	390,266
민간출연금	84,111	91,499	83,970	75,530	100,894	105,636	229,942
	(88.9)	(67.3)	(67.9)	(56.7)	(73.7)	(45.7)	(58.9)
예치금·예탁금 등 회수	9,744	43,343	39,048	57,035	35,156	124,281	158,470
	(10.3)	(31.9)	(31.6)	(42.8)	(25.7)	(53.7)	(40.6)
기 타	714	1,028	579	719	839	1,452	1,854
	(0.8)	(0.8)	(0.5)	(0.5)	(0.6)	(0.6)	(0.5)

주: 1. 괄호 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
2. 2019-2023년: 지출액 기준
3. 2024-2025년: 계획액 기준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사업은 기본적으로 「공탁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기금 신설 당시 기존 공탁출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사업을 구성한 이후 일반회계로부터의 사업 이관, 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2025년도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지원 사업인 국선변호료지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새롭게 이관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사업구조(2025) >

프로그램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공탁법」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 공탁시스템 운용 및 유지	§ 31 i
		◦ 공탁시스템 UHD 사업	
사법시스템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소송구조 지원	◦ 일반 소송구조 지원	§ 31 ii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조정제도 지원	◦ 조정제도 운영 － 조정위원 수당 등 － 각급법원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 교육 등 －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 31 iii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 31 iv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 소년보호재판지원 － 소년보호시설 등에 대한 비용지원 －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지원 － 전문가 진단, 상담 및 화해권고위원 수당지원 － 소년보호재판 등 활성화	§ 31 vi
		◦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 아동보호·가정보호 사건 절차 비용 지원 －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비용 지원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 및 매뉴얼 등 제작 등 비용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국선보조인 선임비용 지원	§ 31 vi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 31 vi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 31 vi
		◦ 사법민원서비스 운영 － 실시간 빠른 통합민원상담창구 － 사건기록 전자화 및 판결서 공개 －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운영 －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 민원접견실 설치 － 법원도서관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	§ 31 vi
	민원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공탁법」
	사법서비스 향상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 31 vi
		◦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성년후견 등 가사비송 절차구조 활성화 －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 －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 등 지원 － 성년후견제도 지원 －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 가사·소년 법관 및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 － 가사민원상담관 도입 － 면접교섭관련 절차비용 지원 － 친권자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비용	§ 31 vi
		◦ 사법교육 및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지원	§ 31 vi
		◦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 31 vi
		◦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 개인파산사건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 31 ii § 31 vi
		◦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 31 vi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 31 vi
		◦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 31 ii
		◦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 전문심리위원 운영 － 감정관리절차 지원	§ 31 vi
		◦ 치료명령대상자 및 친권자지정관련 등 진단비용	§ 31 vi
	국선변호료지원	◦ 국선변호 보수 등(국선전담)	§ 31 ii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31 v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기금 지출은 「공탁법」에 따른 지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사업비와 기금운영비, 그 밖에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출액을 기준으로 본 2023회계연도의 주요사업비 비중은 50% 수준이며, 2024년도 및 2025년도 계획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중이 더 낮아져 각각 31.5%, 26.8% 수준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2019-2025)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 입	94,569	135,870	123,597	133,284	136,889	231,369	390,266
주요사업비	48,483	53,116	67,139	71,864	70,173	72,838	104,520
	(51.3)	(39.1)	(54.3)	(53.9)	(51.3)	(31.5)	(26.8)
기금운영비	68	44	35	31	27	61	51
	(0.1)	(0.0)	(0.0)	(0.0)	(0.0)	(0.0)	(0.0)
여유자금운용 등	46,018	82,710	56,423	61,389	66,689	158,470	285,695
	(48.7)	(60.9)	(45.7)	(46.1)	(48.7)	(68.5)	(73.2)

주: 1. 괄호 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
2. 2019-2023년: 지출액 기준
3. 2024-2025년: 계획액 기준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개선필요사항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 외로 운영되던 공탁출연금 운용 사업을 재정에 포함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업성 기금으로, 「공탁법」 제31조에 따른 각 사업의 수행을 내용으로 함.

기금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금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의 예산 이·전용에 비하여 계획 변경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국가재정법」 제70조),²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계획안 작성 및 사업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소관 중앙관서의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 ~ ⑦ (생략)

- 또한, 「공탁법」 제31조제6호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결공익사업도 기금 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에서 본 기금은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의결공익사업의 과도한 확대는 유사 사업의 중복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기금에 편성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

- 이러한 점에서 「공탁법」 제31조제6호의 의결공익사업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법서비스를 개선·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본 기금의 수입은 가변적 성격의 민간출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적 수입 관리와 불필요한 지출 조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현재 계획액을 기준으로 할 때 주요사업비는 전체 지출 중 31.5% 수준이므로 추가 지출의 여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기금 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간출연금이나 예치금·예탁금 등 회수액은 가변적인 공탁금 잔고, 금리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

(가) 지출구조 체계화 필요

- 재정 외로 운용되던 공탁출연금 사업을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는 기금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국가재정법」 제1조 참조).²¹⁾

따라서 기금의 지출사업은 그 내용과 성과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과 목적, 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은 함께 묶어 구조화하여야 하고, 지출 규모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사업은 독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그런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법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출임에도 상이한 세부사업에 각기 편성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여러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함께 편성하여 사법서비스의 성과관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와 절차구조는 소송구조 지원(1161-301) 및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등 사업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상담위원 운용 역시 민원서비스 개선

21)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61-305),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등 사업에 분리 편성되어 있음.

< 기금운용계획안 중 유사 사업 분리 편성 주요 사례 >

구 분	,세부사업	내 용
소송구조 및 절차구조	소송구조 지원(1161-301)	민사, 가사, 행정, 파산·회생 사건 등 소송비용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난민사건 소송비용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 지원
민원상담위원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일반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운영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가사 민원상담위원 운영

반면,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등은 민원 상담, 사건기록 전자화 및 판결서 공개, 공탁금 국고귀속 안내, 인신보호 제도 운영,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상이한 내용을 담은 여러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본 기금 출범 당시 「공탁법」 제31조제6호에 해당하는 의결공익사업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2년 지출구조 체계화를 통하여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사법서비스 향상으로 분리된 것임. 그러나 민원서비스 개선과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는 성격이 다른 의결공익사업이 여전히 다수 포함되어 있음.

(나) 사업관리역량 강화 필요

- 기금상 지출사업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하나의 사업단위 내에서도 내내역사업, 비목 등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항목별 계획과 지출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본 기금의 지출사업은 각급 법원 등 법원 소속 기관의 수요를 받아 법원행정처가 재원을 배분하고 해당 기관이 비용을 지출하는 식으로 수행되는데, 법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숫자가 많고 일부 사업은 지나치게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법원행정처가 각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서비스 향상(1161-307) 등 일부 사업의 현황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 법원행정처 자료 미보유 주요 항목 >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 용	2025년 계획액 (백만원)
사법서비스 향상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2025년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의 발간일정 등 사업계획	94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2016~2024년 등 기존 인신보호 관련 국내조사비 집행내역	41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16~2024년 등 기존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당 지급 내역	852
국선번호료 지원	국선전담번호사 보수 지원	2016~2024년 국선번호인 중 국선전담번호사 대상 비용 지출 내역	24,598

- 법원행정처는 기금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지출구조 체계화와 병행하여 각 소속 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충실한 수입 관리 및 지출 구조조정 필요

- 기존 집행 내역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 관리 및 지출 조정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수입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및 변상금(57-571) 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각 2023년도, 2025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금수입계획안에 편성되는 등 주요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의 경우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변상금 수입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처음 편성되었으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고려하여 수입액을 추정·계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년도 결산액을 그대로 수입계획안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함.²²⁾

주요 수입인 민간출연금 수입의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출연금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이 민간출연금 수입액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음.²³⁾

22) 변상금(57-571) 수입 부분 참조.

23) 민간출연금(59-594) 수입 부분 참조.

- 지출의 경우 연례적인 집행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출액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²⁴⁾ 지출할 수 없거나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획안에 편성되어 방만한 기금 운용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²⁵⁾

《수 입》

(3) 변상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 기금상의 변상금(57-571) 수입은 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납입유예 등의 소송구조를 실시하였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구조 대상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조금액을 납입받는 것임.²⁶⁾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소송구조 관련 변상금 징수결정은 ① 소송구조를 받은 자의 승계인에게 자금능력이 있는 경우, ②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거나 있게 된 경우, ③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짐.²⁷⁾

24)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사업 부분 참조.

25)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사업 부분 참조.

26) 예산과목으로서의 변상금이란, 법령과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금액으로, 동 기금의 변상금은 주로 소송구조에 관한 것이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촉탁비용 등에도 변상금 징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27)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 예규) 제17조.

- 변상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처음 계상되었고, 규모는 3억원임. 동 기금 설치 후 매년 변상금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징수 결정 및 수납 여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다가 반복되는 수입에 대한 계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²⁸⁾ 이를 수용한 것임.

< 2025년도 변상금 수입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변상금(57-571)	-	-	300	300	순증

(나) 소송구조 사업 규모 확대를 고려한 적극적인 수입 편성 필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설치 당시부터 소송구조 사업에 활용되었고, 매년 변상금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도까지 변상금 수입이 수입 계획안에 계상되지 않았을 만큼 인식이 부족하고 그 편성방안이 정립되지 않았음.
- 현재는 본 기금을 통한 소송구조 지원(1161-301) 등 사업의 지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²⁹⁾ 정교한 변상금 수입 추계 방법을 마련하고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111-112.

29) 이는 차년도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

변상금 채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됨.

- 소송구조 지원 사업의 지출액 규모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 임.

< 소송구조 지원 지출액(2019-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액 ¹⁾	추정액 ²⁾
계획액	6,249	5,337	5,933	6,027	5,930	6,857	6,857
지출액	4,279	4,903	5,534	5,874	5,905	4,497	5,996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 2025년도 변상금 수입계획액은 3억원인데, 이는 결산이 이루어진 2023회계연도의 변상금 수납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변상금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목표 수납율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님.

2019년 이래 징수결정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납액은 등락하고 있으며, 2024년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징수결정액은 19억 8,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4,600만원임.

- 법원행정처는 수납액의 경우 일정한 추세 없이 등락하고 있어 정교한 수입계획액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임.

- 현재액을 기준으로 2024년말까지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선형 추계하면(9월말 기준액 × 4/3), 징수결정액 21억 1,300만원, 수납액 3억 2,800만원이 도출됨.

< 변상금 징수결정 및 수납(2016-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액 ¹⁾	추정액 ²⁾
징수결정액(A)	1,037	1,398	1,458	1,653	1,890	1,981	2,113
전년 미수납	660	845	1,031	1,189	1,395	1,585	1,585
신규 결정	377	553	427	464	495	396	528
수납액(B)	191	366	269	258	300	246	328
수납율(B/A)	18.4	26.2	18.4	15.6	15.9	12.4	15.5

주: 1) 2024. 9. 3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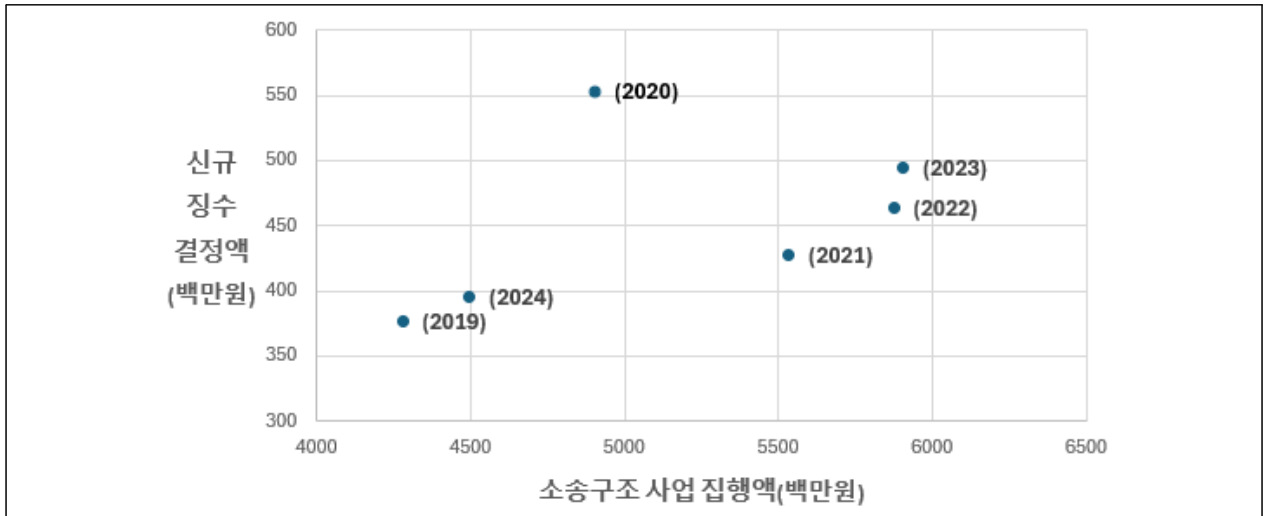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 그런데 그간의 결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 수납액은 당해 연도 신규 징수결정액, 소송구조 지출규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소송구조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송구조 지원(1161-301) 사업 집행액은 2024년 9월말 현재 44억 9,700만원이며, 2024년도 현재액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연도별 소송구조 사업 집행액과 변상금 신규 징수결정액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³⁰⁾

30) 2019-2024년 동안 소송구조 지원 집행액 대비 신규 징수결정액 비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평균값은 8.8%임.

< 소송구조 사업 집행액과 변상금 신규 징수결정액(2019-2024) >



주: 1. 괄호 안은 해당 연도
2. 2024년의 경우 2024. 9. 30. 기준

또한, 2024년도 현재액을 포함하여 연도별 신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형태의 산점도가 나타남.³¹⁾

< 신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2019-2024) >

< 소송구조 지원 집행 및 변상금 신규 징수결정(2016-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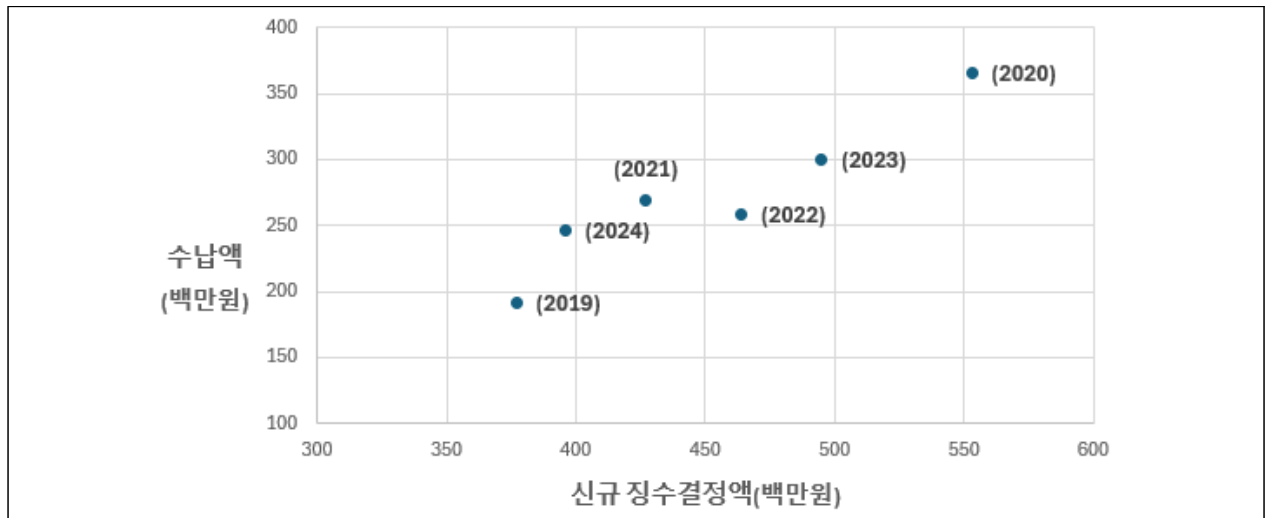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³⁾
						현재액 ¹⁾	추정액 ²⁾	
계 획 액	6,249	5,337	5,933	6,027	5,930	6,857	6,857	6,056
집 행 액 (A)	4,279	4,903	5,534	5,874	5,905	4,497	5,996	5,415
신규 결정 (B)	377	553	427	464	495	396	528	474
대 비 (B/A)	8.8	11.3	7.7	7.9	8.4	8.8	8.8	8.8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3) 평균 계산에는 2024년도 추정액 반영

31) 2019-2024년 중 신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나 전반적으로는 60% 내외 수준에 있으며, 그 평균값은 60.2%임.

< 신규 징수결정 및 수납(2016-2024) >



주: 1. 괄호 안은 해당 연도
2. 2024년의 경우 2024. 9. 30. 기준

○ 소송구조 지원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에 상응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며, 신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간의 선형적인 관계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소송구조 지원 규모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소송구조 지원 규모의 증가는 변상금 징수결정액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법원도 2023년 7월 개인파산·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³⁾
						현재액 ¹⁾	추정액 ²⁾	
신규 결정(A)	377	553	427	464	495	396	528	474
수납액(B)	191	366	269	258	300	246	328	285
수납율(B/A)	50.7	66.2	63.0	55.6	60.6	62.1	62.1	60.2

주: 1) 2024. 9. 30. 현재
2) 2024. 9. 30. 현재 기준액 × 4/3
3) 평균 계산에는 2024년도 추정액 반영

있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여,³²⁾ 소송구조의 문턱을 낮춘
바 있음.

- 따라서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기존 결산 결과에 따른 평균적
수납금액을 수입계획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변상금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요인
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목표 수납율을 설정하여 변상금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음.

변상금 징수결정의 바탕이 되는 소송구조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
에서 현재와 같이 기존 결산 결과 내지 그 평균액을 수입계획안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수입 관리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기금
수입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것이 될 수 있음.

32)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
건의 소송구조 대상자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변경하였음.

(4) 민간출연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민간출연금 수입(59-594)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으로,
-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2024년 계획액 1,056억 3,600만원에 비하여 117.7% 증가한 2,299억 4,200만원임.

< 2025년도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민간출연금(57-571)	105,636	105,636	229,942	124,306	117.7

(나) 충분한 출연금 수입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법원은 시중은행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관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금 중 일부는 다시 기금으로 출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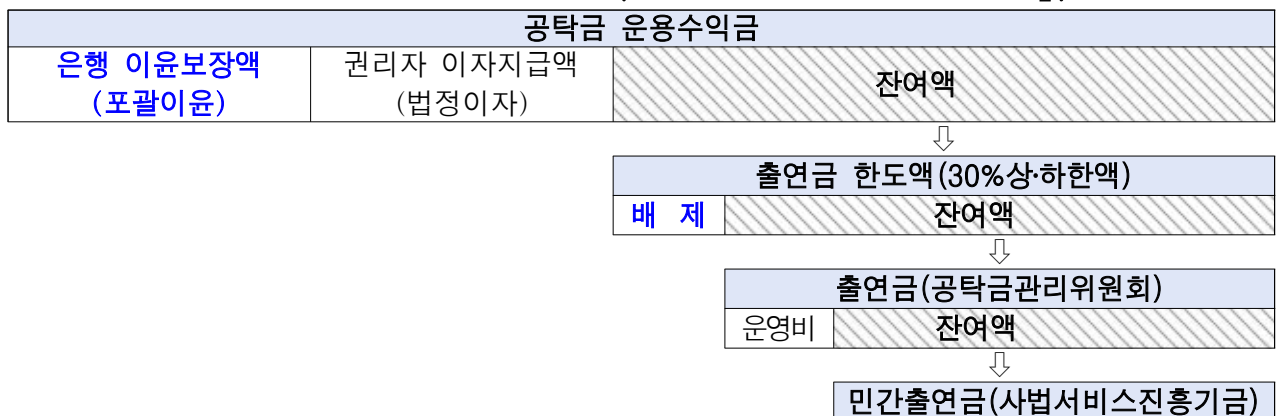
민간출연금은, 「공탁법」 제19조 등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의 전년도 공탁금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결정하고 보관은행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동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수납되고 있음.

-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은행에 귀속할 포괄이윤과 공탁금출급청구권자에게 귀속할 법정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는데(「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³³⁾

위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은행의 출연액에는 전년도 출연금의 130%를 상한으로 하는 한도액 제한이 적용되므로, 그 한도액 초과 부분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됨.

< 민간출연금 규모 확정 과정(「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주: 푸른 글씨는 주요 미출연금

33)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민간출연금 산정방식은 2020. 3. 4.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³⁴⁾ 공탁금의 보관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은행의 자금운용 관련 발생원가, 공탁금 취급 관련 업무원가 및 최소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임.³⁵⁾
- 그런데 현행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 민간출연금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출연금 수입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 이후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민간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보관은행의 포괄이윤액이 민간출연금 수입액보다 많으며, 공탁금 평균 잔액 대비 민간출연금의 비율은 매년 1% 남짓한 수준에 불과함.

< 공탁금 운용수익금 및 민간출연금(2020-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평균 잔액(A)		8,727,643	9,198,169	10,520,245	11,125,709	10,918,539
운용수익금		271,860	241,840	248,206	353,123	490,732
이자비용		30,547	20,263	10,521	18,168	38,210
포괄이윤(B)		142,841	136,928	161,729	196,230	192,179
출연금 한도 초과(C)		7,023	647	426	37,831	118,793
출연금(위원회)		91,449	84,002	75,530	100,894	141,550
민간출연금(D)		91,499	84,002	75,530	100,894	141,550
포괄이윤 등(E=C+D)		149,864	137,575	162,155	234,061	310,972
대 비	E/D	163.9	163.8	214.7	232.0	219.7
	D/A	1.0	0.9	0.7	0.9	1.3

주: 민간출연금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6월 10일까지 기금에 출연되므로, 2024년도 민간출연금은 이미 수납되었음.

34) 기존 민간출연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2019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반영한 것임. 다만, 출연금의 상한을 정한 동 규칙 제19조 단서 부분은 규칙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것임.

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2019), 55..

- 이러한 문제는 ① 법원이 정해진 이율 상당의 출연금을 먼저 확보하거나 보관은행에 제한된 정률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보관은행별 순이자마진을 직접 반영한 포괄이윤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는 점, ② 보관은행의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감사원도 공탁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보관하는 현금 등을 취급하는 은행과 비교할 때 공탁금 보관은행의 평균 운영잔액 대비 출연액의 비율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음.³⁶⁾

- 따라서 법원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충분한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관은행에는 적정한 이윤만이 지불 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주요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6) 감사원, 감사보고서 -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 실태 (2022), 19-24.

《지 출》

(5) 민원서비스 개선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은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지출계획액은 전년 246억 7,000만원 대비 30.7% 증가한 322억 3,700만원임.

< 2025년도 민원서비스 개선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24,670	24,670	32,237	7,567	30.7

(나) 구체적인 수요 조사와 사업계획 없는 지출계획안 편성 부적절

- 동 사업은 민원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위원 운영, 노약자·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마련 등을 수행함.

민원상담위원 제도는 법무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선 지원창구 등에서 법원을 방문한 사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법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임.

2024년 9월말 현재 민원상담위원은 일반 민원상담위원(72명), 우선 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소속 민원상담위원(69명) 및 가사 민원상담위원(9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현원은 150명임.

< 민원상담위원 유형(2024) >

(단위: 명)

구 분	업 무	정원	현원
일반 민원상담위원	법원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법률상담	72	72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우선지원창구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법률상담	74	69
가사 민원상담위원	가정법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법률상담	9	9
계		155	150

법원은 민원상담위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퇴직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하여 그 경험과 지식을 민원서비스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유형별 민원상담위원 위촉(2016-2024) >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체	65	71	92	101	110	122	129	140	150
일 반	53	52	59	59	64	64	64	64	72
우선지원창구 등	7	10	24	33	37	49	56	67	69
가 사	5	9	9	9	9	9	9	9	9
前 법원공무원	63	69	89	98	107	119	126	135	144

주: 현원 기준

○ 우선지원창구와 사법접근센터는 기존 민원시설 내에 별도의 전담 창구(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사법접근센터)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서비스를 제공함.

- 우선지원창구와 사법접근센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1심 법원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9월말 현재 우선지원창구는 34개, 사법접근센터는 9개의 법원 및 지원에서 운영 중임.

<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 설치 현황(2024) >

고등법원	우선지원센터 설치 법원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
서울(15)	서울중앙, 서울가정·행정(종합청사), 서울회생,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방법, 인천지방법, 인천가정, 의정부지방법 고양, 의정부지방법 남양주, 인천지방법 부천, 춘천지방법 원주, 춘천지방법 속초	서울동부, 서울남부
대전(5)	대전가정, 대전지방법 홍성, 대전지방법 천안	대전지방법, 청주지방법
대구(5)	대구가정, 대구지방법 서부, 대구지방법 포항, 대구지방법 김천	대구지방법
부산(5)	부산지방법, 창원지방법, 부산지방법 서부, 창원지방법 진주	울산지방법
광주(6)	광주가정, 제주지방법, 광주지방법 순천, 전주지방법 군산	광주지방법, 전주지방법
수원(7)	수원가정, 수원회생, 수원지방법 성남, 수원지방법 여주, 수원지방법 평택, 수원지방법 안산	수원지방법(종합청사)

주: 괄호 안은 해당 고등법원 관내 설치 법원 수

○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에는 2~3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신설하고, 기존 우선지원창구 8명, 신설 우선지원창구 4명 등 총 12명의 민원상담위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임.

- 우선지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 2억 5,900만원, 우선지원

창구 민원상담위원 수당 9억 5,600만원 등 총 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우선지원창구 관련 지출계획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2024년	2025년	증감
우선지원창구 설치 및 운영	우선지원창구 설치공사비	232	160	△72
	우선지원창구 비품구입비	72	72	—
	우선지원창구 운영비	27	27	—
	소 계	331	259	—
민원상담 등 서비스 제공 (우선지원창구 관련)	민원상담위원 수당	956	956	—
	소송당사자 조력자 수당	36	36	—
	통역 자원봉사자 등 지원	310	310	—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제작	60	60	—
	소 계	1,362	1,362	—

- 우선지원창구와 민원상담위원을 확대·운용하는 것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등의 취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그러나 우선지원창구 및 민원상담위원 확대 등에 대하여 국회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려면 수요 조사를 거쳐 대상 법원, 확대·운용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의 우선지원창구 및 민원상담위원 확대는 이러한 충분한 사업구상과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임.

- 법원에 따르면, 우선지원창구 신설 대상 법원은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어느 법원에 어느 규모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음.

또한, 민원상담위원 추가 위촉 역시 민원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법원별 민원 수요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우선지원창구가 신설될 법원이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민원상담위원이 추가 위촉될 법원도 전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충분한 사업계획을 갖추지 않고서 우선 지출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은 사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기타 기금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인신보호제도 운영, 국민참여재판 운영, 난민 재판 지원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사법서비스 향상의 2025년도 지출계획액은 전년도 지출계획액 134억 6,900만원 대비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8억 9,400만원이고,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에는 15억 5,800만원이,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에는 46억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13,469	13,469	13,894	425	3.2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77	2,077	1,558	△519	△25.0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운영	1,662	1,662	4,625	2,963	178.3

(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연구비 예산의 조정 필요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운영과 그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배심원 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료수집비 및 조사연구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25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2024년	2025년	증감
기본운영비	배심원 회의 운영, 담당재판부 회의 운영 등	674	373	△301
배심원 수당	배심원후보자 및 배심원의 일당, 여비 등	1070	852	△218
교육 홍보	대국민 홍보물 배부, TV 홍보 실시 등	186	186	—
사법참여기획단 운영	실무자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위촉위원 회의	70	70	—
해외자료수집	각국 국민참여형 재판 제도 조사·수집	52	52	—
조사연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25	25	—

- 동 사업의 조사연구비는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 제도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나, 협소한 주제와 제한된 비용으로 인하여 매년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사연구비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처음 설

치된 이래 매년 동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내에 계약 체결과 비용 지출을 마무리한 사례는 전무하고, 연구용역계약조차 매 연도말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조사연구 결과(2016-2024) >

(단위: 천원)

구 분	주 제	계약일	지 출	
			연내	이월
2016년	피고인 신청률 제고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2016.10.28.	—	50,000
2017년	국민참여재판 항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11.13.	—	29,200
2018년	미 실시		—	
2019년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2019.12.24.	—	29,300
2020년	전염병 상황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안	2020.12.23.	—	29,400
2021년	평결 및 양형이건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1.12.30.	—	29,000
2022년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2022.08.23	—	24,000
2023년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의 연구	2023.12.28.	—	24,000
2024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미체결	—	—

○ 동 사업의 조사연구가 매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출을 차년도에 이월하고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한된 주제와 부족한 계획액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는 연구수행자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금액 이월을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은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한 국민참여재판의 조사연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정책연구용역비 등과 통합하여 적시성 있는 주제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다) 감정관리위원의 위촉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지출계획 조정 필요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절차를 지원하는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전문심리위원은 의료, 건설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의 심리에 참여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등),³⁷⁾

특정 사건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 심리에 참여하는 일반 전문심리위원과 일정한 기간 동안 위촉되어 법원이 요구하는 심리에 참여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구분됨(「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³⁸⁾

37)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024년 9월 현재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14명이 위촉되어 있음.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원은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감정 등 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을 겸하는 감정관리위원직을 신설·운영할 예정임.
- 감정관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감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인과 접촉하여 감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이에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운영 사업에 관한 2025년도 지출계획안에는 상임전문심리위원 보수, 전문심리위원 수당과 새롭게 도입되는 감정관리위원의 보수와 그 사무실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38)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2025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운영 사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2024년	2025년	증감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상임전문심리위원 보수	1,482	1,482	-
전문심리위원 운영	전문심리위원 수당	180	180	-
감정관리절차 지원	신규 위촉 감정관리위원(19명) 보수	-	2,052	순증
	감정관리사무실 설치 등	-	899	순증
	감정관리사무실 운영비	-	12	순증

- 감정관리위원회도 「민사소송법」 상의 전문심리위원에 해당하지만, 감정 절차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임전문심리위원과는 업무수행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관리위원의 근거를 두는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

법원에 따르면, 감정관리위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칙 개정안은 금년 말 처리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감정관리위원 관련 규칙 개정안 추진 일정 >

내부 검토	입법예고	대법관회의	시 행
10월 초순	10월 초 ~ 10월 말	11월 중순	2025년 1월 1일

감정관리위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 16명을 감정관리위원으로 겸임 위촉하는 한편, 17명의 감정관리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임.

- 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절차는 통상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감정관리위원의 위촉절차도 연초부터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감정관리위원 보수가 12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음.

법원에서는 재판지연 방지를 위하여 감정관리위원직을 신설한 것이니만큼 그 최초 위촉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1월 말까지는 위촉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감정관리위원 보수 중 2월분은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감정관리위원의 보수는 월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17명에 대한 2월분 보수액은 3억 600만원임.

(7)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선변호료지원(1161-307)은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인신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국선변호인 관련 비용 중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까지 국선변호인 관련 비용은 전부 일반회계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나 그중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부분은 2025년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의 2025년도 지출계획액은 245억 9,800만원인데,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2024년도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226억 3,100만원과 비교할 때 19억 6,700만원 증가한 것임.

< 2025년도 국선변호료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국선변호료지원(1161-307)	-	-	24,598	24,598	순증

(나) 국선번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국선번호인 제도 운영은 「공탁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본 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사업임.
 - 국선번호인 지원 규모가 상당하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까지는 일반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2025년도부터 국선번호인 지원 중 국선전담변호사 비용 부분만 본 기금으로 이관되었음.
 - 현재 국선번호인은 특정한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되는 일반 국선번호인과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에 위촉되어 위촉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선번호사건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되고 있음.
- 「공탁법」 제3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선번호 제도 운영에 관한 사업이 본 기금에 편성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선전담변호사 부분의 기금 이관은 법률의 취지를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번호인보다 국선번호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용이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는 개별적으로 수입한 다른 사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위촉기간 동안 국선변호사건만 수행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2004년 시범사업에서 11명을 처음 위촉한 이래 국선전담변호사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24년 현재는 234명이 위촉되어 있음.³⁹⁾

< 국선전담변호사 정원 및 처리 사건(2016-2024) >

(단위: 명,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 ¹⁾	추정 ²⁾
국선전담변호사	222	226	230	233	234	234	234	234	234	234
처리 사건 ³⁾	50,728	50,762	46,511	46,715	46,469	42,418	43,208	44,086	32,039	48,059

주: 1) 2024. 8. 31. 현재

2) 2024. 8. 31. 현재 선정사건 × 3/2

3)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런데 최근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선발예정인원 대비 접수인원이 감소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하락

39)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04년, 2005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6년부터 정식 실시되었음.

한 것으로 보임. 201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대상자 선발 당시 경쟁률은 15.2 : 1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9 : 1에 불과하였음.

<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예정인원 대비 접수인원(2016-2024) >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선발예정인원(A)	19	36	42	41	47	37	52	32	29
접수인원(B)	288	294	299	194	273	211	226	169	112
대비(B/A)	15.2	8.2	7.1	4.7	5.8	5.7	4.3	5.3	3.9

주: 1. 각 연도는 위촉연도

2. 선발 절차는 전년도 12월에 시작되며, 위촉기간은 위촉연도 3월 1일부터 2년임.

- 국선전담변호사의 선호도 하락에는 2006년 이래 월 600~8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보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⁴⁰⁾

국선전담변호사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보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⁴¹⁾

법원은 2022년 연구용역을 거쳐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40) 보수기준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1인의 월 보수액은 최하 600만원, 최고 800만원임.

<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기준(2015. 3. 1. 이후 위촉 시) >

구 분	위 촉	보 수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미보유	최초 위촉	월 600만원
	1회 재위촉	월 700만원
	2회 재위촉	월 800만원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보유	경력 2~4년	월 700만원
	경력 4년 이상	월 800만원

41)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액은 제도 도입 당시 800만원을 한도로 정해진 후 증액된 적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므로, 인건비 월 100만원, 사무실 운영비 월 30만원씩을 각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2022)을 발간하고 그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일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 인상만 일부 반영되었음.

< 유형별 국선변호 보수(2019-2024)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요 구 ¹⁾	확 정 ²⁾
일반 국선	사건당 보수(만원/건)	40	40	40	45	50	60	55
국선 전담	보수(인건비)(만원/월)	600~800	600~800	600~800	600~800	600~800	700~900	600~800
	사무실 운영비(만원/월)	50	60	60	60	60	60	60

주: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법원의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수 인력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유치하고 국선변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및 충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⁴²⁾
- 한편, 2016년 이래 감소 추세에 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사건의 수가 2021년 이후 소폭 반등하여 금년에는 48,059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향후에도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같은

42) 법원에서 요구하는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의 증액도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인건비 월 100만원, 사무실 운영비 월 30만원씩을 각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수준의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촉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선번호인보다 사건당 보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형사공판사건 1건당 사건 처리 비용(2019-2025) >

(단위: 건, 명, 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³⁾
							현재 ¹⁾	추정 ²⁾	
국선 전담	처리 사건(A) 4)	46,715	46,469	42,418	43,208	44,086	32,039	48,059	48,059
	위촉 인원(B)	233	234	234	234	234	234	234	249
	기준 인건비(C)*	710	710	710	710	710	710	710	710
	기준 운영비(D)	50	60	60	60	60	60	60	60
	총 보수 (E=B*(C+D)*1.2)	2,124,960	2,162,160	2,162,160	2,162,160	2,162,160	1,441,440	2,162,160	2,300,760
	사건당 보수(E/A)	45.5	46.5	51.0	50.0	49.0	45.0	45.0	47.9
일반	처리 사건4)	78,331	78,423	75,553	78,986	91,510	71,830	107,745	107,745
국선	사건당 보수	40	40	40	45	50	55	55	55

* 2019~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건비 평균액

주: 1) 2024. 8. 31. 현재

2) 2024. 8. 31. 현재 선정사건 × 3/2

3) 2024년도 추정치와 동일한 처리 사건 수 가정

4) 형사공판사건 국선번호인 선정 기준

V. 대체 토론의 요지

(대체 토론 또는 서면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또는 지적된 사항)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신변보호장치’는 2025년도에 신규장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현재 경찰청 보유분으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운용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검찰청 보유분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 필요
- ‘임시안전숙소’는 최근 5년간 수요에 맞춰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었고 집행추이도 양호하므로, ‘신변보호장치’에서 감액한 예산을 ‘임시안전숙소’ 사업 예산에 증액 배정 필요
- 지역거점 원스톱 솔루션센터 1개 기관 추가 개소를 위하여 설치비 17억 1,500만원, 운영비(6개월) 12억 6,200만원 및 인건비(6개월) 1억 2,300만원 등 설치·운영비 31억원 증액 필요
- 진술조력 대상 확대 및 지원 건수 증가추세에도 급여가 적어 상근 진술조력인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전국 정원 16명, 현원 13명 배치), 상근 진술조력인 급여 현실화 및 장기 근속수당 도입을 위하여 8,600만원* 증액 필요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중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 내역사업의 조사연구비는 협소한 주제와 제한된 비용으로 인해 매년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 개선’ 사업의 정책연구비와 통합할 필요
-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할 필요
-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중 7호 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치료위탁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필요
- 소송서류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스캔단가에 비해 민사 등 사건의 스캔단가가 과도하게 높으므로 민사 등 사건 및 형사 사건의 기록 등 스캔 사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스캔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 국선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예산 증액 필요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3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3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음.

구체적으로, 운용실적이 미흡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치’ 예산 3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범죄피해자 임시안전 숙소’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8,600만원도 반영하였음.

아울러, 범죄피해자 및 유족측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며,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구상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 사업의 조사연구비 2,500만원을 일반회계 ‘사법정책 연구개선’ 사업의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기 위하여 이

관 및 감액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38억 4,800만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억원 등 총 59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음.

아울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Ⅶ. 심사결과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 원안의결

지출 : 수정의결 [붙임2 참조]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 신변보호장치 3억 1,700만원 감액
 - 임시안전숙소 3억 1,700만원 증액
-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31억원 증액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8,600만원 증액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 원안의결

지출 : 수정의결 [붙임3 참조]

-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
 - 소년보호재판 지원(치료위탁기관 지원) 5,000만원 증액
-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개선 1,000만원 증액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조사연구비) 2,500만원 감액
 - 고령자 보호·지원 20억원 증액
- 국선변호료 지원(1161-307) 38억 4,800만원 증액

Ⅷ.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및 유족측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수 결정을 하며,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구상률을 제고한다.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 대법원은 민사 등 사건 및 형사사건의 기록 등 스캔 사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스캔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IX.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제시

-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 포화로 인한 단속 적체 및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보호시설,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16억원 증액 필요(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 신규)
- 법무부는 2024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 무시’ 과잉 단속 논란이 발생한 만큼, 무주군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 시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붙임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안

(1) 수입: 원안의결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503	△317	3,186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908	△25	5,883
	합 계		9,411	△342	9,069

[붙임 2] 2025년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영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원안의결

(2) 지출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135-306)	3,446	3,446	5,540	5,540	△317	○ 내역사업인 ‘신변보호장치’는 2025년도에 신규장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분으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3억 1,700만원 감액	※증감액연계 (내역사업간)
						317	○ 내역사업인 ‘임시안전숙소’는 최근 5년간 수요에 맞춰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었고 집행추이도 양호하므로, 3억 1,700만원 증액	
2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135-300)	21,099	21,099	21,442	24,542	3,100	○ 신규 내역사업 ‘원스톱솔루션센터 추가 개소’를 편성하여, 지역거점 원스톱 솔루션센터 1개 기관 추가 개소를 위한 설치·운영비 31억원 증액	
3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1,632	1,632	1,632	1,718	86	○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배치’는 진술조력 대상 확대 및 지원 건수 증가추세에도 급여가 적어 상근 진술조력인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근 진술조력인 급여 현실화 및 장기 근속수당 도입을 위하여 8,600만원 증액	

[붙임 3] 2025년도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원안의결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13,469	13,469	13,894	15,869	△25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20억 7,700만원, 전년 대비 5억 1,900만원 감액)의 조사연구비(2,500만원)를 일반회계 사법 정책 연구개선 사업(1143-405)의 내역사업인 ‘법원정책연구비’(6억 5,000만원,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 감액)와 통합하기 위하여 2,500만원 감액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회계기금간)
						2,000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으로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20억 원 증액	
2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6,450	6,450	9,207	9,257	50	○ 내역사업인 ‘소년보호재판지원’(41억 3,100만원, 전년 대비 3억 1,900만원 증액)은 7호 처분 치료위탁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5,000만원 증액	
3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24,670	24,670	32,237	32,247	10	○ 내역사업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개선’(1,000만원, 전년 동)은 판결문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국선번호료지원 (1161-307)	-	-	24,598	28,446	3,848	○ 동 사업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를 각각 월 100만원, 월 30만원씩 인상하기 위하여 38억 4,800만원 증액	